

한국정보과학회 포상 운영 규정

1988년 1월 19일 제정
2005년 11월 11일 개정
2011년 11월 30일 개정
2015년 11월 26일 개정

제 1 조(목적)

본 규정은 한국정보과학회 운영규칙 제8장(포상 및 장려)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포상분야 및 상의 종류)

1. 포상분야는 학술분야, 기술분야, 공로분야, 기타분야로 한다.
2. 학술분야, 기술분야, 공로분야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한 개 이상의 상을 둘 수 있다.
3. 기타분야에는 회장이 결정한 한 개 이상의 상을 둘 수 있다.

제 3 조(상의 제정, 변경, 폐기)

1. 학술분야, 기술분야, 공로분야 상의 제정, 변경, 폐기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한다.
2. 학술분야, 기술분야, 공로분야 상의 제정, 변경, 폐기에 대해서는 법제포상위원회에서 해당 요청서 및 포상규정을 심의하여 이사회에 상정한다.
3. 회장, 지부장, 소사이어티 회장, 연구회 운영위원장은 학술분야, 기술분야, 공로분야 상의 제정, 변경, 폐기 요청서 및 포상규정을 작성하여 법제포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.
4. 기타분야 상은의 경우에는 회장이 제정, 변경, 폐기를 할 수 있다.

제 4 조(수상 자격)

1. 학술분야: 정보과학 관련 분야에서 다년간 창의성을 발휘하여 논문발표 및 우수한 저서를 집필하여 정보과학 발전에 공로가 지대하다고 인정되는 인사 및 기관
2. 기술분야: 정보과학 분야의 독창적인 연구개발로 해당 분야에서 획기적인 업적과 객관성 있는 공적을 보유한 인사 및 기관
3. 공로분야: 학회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인정되는 인사 및 기관
4. 기타분야: 학회 및 정보산업 발전에 공헌이 현저하여 회장이 포상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인사 및 기관

제 5 조(포상후보자 선정)

1. 포상규정에 정의된 포상추천자가 포상규정에 따라 포상후보자를 선정 할 수 있다.
2. 회장은 기타분야의 포상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다.

제 6 조(추천서류 작성 및 제출)

1. 포상추천자는 포상규정을 성실히 따랐음을 입증할 수 있는 포상추천서를 작성, 제출하여야 하며, 필요에 따라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할 수 있다.
2. 학술분야, 기술분야, 공로분야의 포상추천서는 포상추천자가 법제포상위원회에 제출한다.
3. 기타분야의 포상추천서는 회장에게 제출하며, 회장의 지시에 의한 경우 생략할 수 있다.

제 7 조(포상자 선정 및 시상)

1. 법제포상위원회에서는 포상후보자를 심의하고 포상자를 선정 후 회장과 이사회에 보고한다.
2. 기타분야 상의 경우에는 회장이 포상자를 선정 후 이사회에 보고한다.
3. 회장은 포상자에 대한 시상을 포상규정 따라 시행한다.
4. 회장은 시상 이력을 유지, 관리하여야 한다.

부칙

1. 본 규정은 2015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.